

제 493 호

1975.3.2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제		
	제 937 호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중요제신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3
◎ 규	칙		
	제 1453 호 :	서울특별시구세성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	3
	제 1454 호 :	서울특별시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흥음식세계세 면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4
	제 1455 호 :	서울특별시임시고용원규정중개정규정.....	6
	제 1456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1
	제 1457 호 :	서울특별시민사규칙중개정규칙.....	12
	제 1458 호 :	서울특별시기획조정위원회규정중개정규칙.....	16
◎ 고	시		
	제 38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6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68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업체 지정공고...	21
제 6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2
제 70 호 : 중구청장공인개각공고.....	23
제 72 호 : 도봉구청장공인개각공고.....	23
제 73 호 : 1975 년도 실업계학생현장실습업체 협의지정공고...24	
제 74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업체 대 체 지정 공고.....	26
제 55 호 (용산구공고) : 공인개각공고.....	26
● 사 령.....	29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1975년 3월 2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937 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중요재산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중
요재산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 19 조 제 6 호에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중요재산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재산은 중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조건없이
재산의 기부를 원하는 자로부터 이
를 제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1. 1건당 예상가격 500만원 이
상의 재산

다만,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
평 이상의 재산(예상가격 500만원
이하 포함)

2. 제 1 호 이외의 재산으로 교육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구세정위원회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3월 29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453 호

서울특별시구세정위원회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구세정위원회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3 항중 * 부위원장은 서무
제 2 과장 * 을 * 부위원장은 시민생활
국장 *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흥
음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시행 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454 호

서울특별시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흥
음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흥음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이하 " 조례 " 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면제신고) 조 제 2 조의 규
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면제받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 서
식에 의한 면제 신고서에 별지
제 2 호 서식의 외국관광객 알선
확인서 및 수수료 지불영수증 (정
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익월 5
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

별지제 1 호서식

유흥음식세 면제신고서

○ ○ 구청장 귀하

영업장소재지			
특별징수의무자		육 호	
면제받는 고내 비용	행위인원	단체수	
	과세표준액		
	세 율		
	면제세액		

첨부 : 외국관광객 알선 확인서 부
수수료 지불영수증 (정산서) 부

서울특별시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흥음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임시고용원규정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455 호

서울특별시 임시고용원
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임시고용원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임시직의 임면) ①임시직은 이
대회계년도초에 본청은 시장.구청은

구청장, 사업소는 당해 사업소장이
임명하고 매 회계년도 말에 해임한다.

②전자계산분야직종은 별표 3의 임
용기준에 의한 진행에 합격한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전함 처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별표 2)

임시 고용원 보수 지급 기준표

등급	보수의 한계	직	종
1	15,000 원	경비원 . 차량정리원	
2	16,000	사환 . 전달부	
3	17,000		
4	18,000		
5	20,000	전달부	
6	21,000	잡 부	
7	22,000		

등급	보수의 한계	직 종
8	24,000	<u>안내원</u> , 타자원, 기관수, 경리원, 감시원, 관리원, 경비원, 미용사, 수위, 청소원, 시험원, 원예사, 전달부, 직공, 정비원, 잡부, 전공, 청부, 위사부, 행정보조원
9	25,000	기사, 경비원, 사감, 차량정비원, 행정보조원, 전공, 청부, 타자원, 경리원, 포환원, 감시원, 수위, 시험원, 운전원
10	26,000	감시원, 가족계획요원, 결핵관리요원, 민원보조원, 전공, 행정보조원
11	27,000	교도원, 기관수, 기사, 기계공, 경비원, 보조, 수위, 시험원, 원예사, <u>안내원</u> , 의료요원, 잡부, 행정보조원
12	29,000	교도원, 기관수, 기사, 감시원, 가족계획요원, 기계공, 보조, 사감, 시험원, 정비원, 전공, 타자원, 행정보조원, 기사, 경리원, 관리원
13	30,000	기사, 경리원, 관리원, 행정보조원, 소독수, 천공원
14	31,000	기사, 기계공, 운전원, 조절수, 직공, 정비원, 전공, 행정보조원, 가족계획요원, 결핵관리요원, 경비원
15	32,000	기관수, 기사, 결핵관리요원, 기계공, 관리원, 상담원, 원예사, 아동부리지도원, 운전원, 직공, 전공, 행정보조원
16	33,000	기사, 간호원, 가족계획요원, 기계공, 운전원, 직공, 전공
17	34,000	기사, 상담원, 행정보조원, 감시원, 천공원
18	35,000	기계공, 운전원, 직공, 정비원, 청원경찰

등 급	보수 외 한계	직 종
19	37,000	안내원, 직공, 청원경찰
20	38,000	가족계획요원
21	40,000	기관수, 기계공, 직공, 전공, 축산원, 행정보조원, 마부, 천공원
22	41,000	
23	42,000	교도원, 기계공, 사서요원, 안내원
24	43,000	운동장지도원, 행정보조원
25	45,000	구호협회간사, 상담원, 조절수, 직공, 정비원, 전문위원
26	46,000	기사, 시험원, 운전원, 부랑아전문위원, 직공, 정비원, 전문위원, 행정보조원
27	47,000	교도원, 기사, 상담원, 행정보조원
28	49,000	
29	50,000	기사
30	52,000	연예사
31	53,000	정비원, 기관수, 기계공, 전공, 오퍼레이터
32	54,000	기관수, 전공
33	56,000	연예사
34	57,000	
35	58,000	교도원, 기사, 연예사, 전공, 행정보조원, 오퍼레이터
36	59,000	의료요원
37	60,000	
38	62,000	연예사, 전문위원, 교관
39	63,000	기사, 정비원, 오퍼레이터, 프로그래머
40	64,000	기관수, 기사, 기계공, 전문위원, 전공
41	66,000	교도원, 연예사, 정비사

등급	보수 외 한계	작	종
42	67,000		
43	68,000	행정보조원, 프로그래머	
44	70,000	수의사, 연예사	
45	71,000		
46	72,000	기사	
47	74,000	연예사, 프로그래머	
48	75,000	건공	
49	78,000	운전원, 정비원	
50	80,000	연예사	
51	81,000	건공	
52	82,000	승무감독	
53	84,000	연예사	
54	88,000	연예사, 시스템 아나리스트, 행정보조원	
55	89,000	외사	
56	93,000	외사	
57	107,000	외사	
58	113,000	연예사	
59	117,000	연예사	
60	143,000	연예사	
61	147,000	외사	
62	160,000	외사	
63	200,000	외사	

(별표 3)

전자계산분야 임용 기준

직 종	전 형 방 법	비 고
시스템 아날리스트	1. 서류심사 2. 필기시험 (영어, 논문, 전자계산 조직이론) 3. 면접시험, 채용신체검사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프로그래머	1. 서류심사 2. 필기시험 (영어, 직성검사, 전자계산 조직이론) 3. 면접시험, 채용신체검사	
천공원	1. 서류심사 2. 실기시험 3. 면접시험, 채용신체검사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오퍼레이터	1. 서류심사 2. 필기시험 (영어, 전자계산 조직이론) 3. 면접시험, 채용신체검사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3월 29 일

◎서울특별시규칙 제 1456 호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2 항 제 3 호중 마목을 아목으로 하고, 마목내지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시장지시사항시달 및 조치사항분석

바.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사. 주요업무 일일보고

제 14 조 제 2 항 제 3 호 나목중 「한강」을 「주택」으로 하고 동항제 4 호 마목중 「지하철건설본부」를 「지하철본부」로 한다.

제 25 조 제 2 항 제 2 호 가목 및 나목중 「및 단속」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간호보조원 양성에 관한 사항
제 37 조중 「양정제」를 각각 「삭선활개선제」로 하고, 동조제 2 항 제 1 호중 나목 내지 거목을 사목내지 버목으로 하며 나목내지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식생활개선 및 미곡소비절약
다. 식생활개선홍보 및 행사
라. 식생활개선 학습지도

마. 식음개발 및 유관단체감독
바. 각종 요리강습 및 지도감독

제 70 조 제 2 항 제 1 호중 사목을, 삭제하고, 동항 제 3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폐연차량의 단속

제 73 조 제 2 항중 제 1 호 및 제 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관리제

가. 지하도 및 지하상도의 행정적인 관리

나. 도로상의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다. 도로부지점용 및 사용허가
라. 유교사용허가(관리)

마. 도로상의 장애물관리

바. 도로수익자 부담금과징에 관한 사항

사. 도로부지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아. 도로부지침기등기에 관한 사항
자. 과내 다른계 주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지관리제

가.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시공감독은 제외)

나.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사항 (시공감독은 제외)

다. 하천 및 구거부지 침기등기에 관한 사항

라.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 및 사용허가

마. 하천 및 구거부지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바. 하천부지교환에 관한 사항

사. 폐천부지 양수에 관한 사항

아. 하천수익자 부담금과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457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단서 및 제 5 조의 2 중 「군무명정조정위원회」 다음에 각각 「및 군무명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삽입한다.

제 6 조 제 2 항 및 제 109 조 제 2 호 중 「부청장」을 각각 「시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제 35 조 제 4 항 중 「이 경우 임용급류는 5 급을류 및 기능직 9 등 급이하 공무원에 한한다」를 「이 경우 임용급류는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출업자 5 급급류 또는 기능직 8 등급으로, 실업고등학교출업자는 5 급을류 또는 기능직 9 등급이하로 하며 제 26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 45 조 중 「3 급」을 「4 급」으로 한다.

제 57 조 「본문」을 「제 1 항」으로 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새마을포관으로 계속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영계 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승진한다.

제 80조 제 1항단서의 절차 구분란중 「한강건설, 지하철건설」을 「주택건설, 지하철본부」로 하고, 구출장소 4갑이하 재출절차란중 「구」를 「시민생활구」으로 하며 수도사업소란을 삭제하고 3급갑류이상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란중 「3급」을 「4급이하」로 하고, 동조 제 2항중 제 4호를 삭제한다.

제 95조 제 4항중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를 「매년 1월중」으로 한다.

제 111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창에는 단체표창과 개인표창으로 구분하며 개인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모범공무원 : 4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유신이념이 투철하며 시정발전 및 새마을사업에 공헌한

자로서 월 5,000원의 상여금을 1년간 지급한다.

- 2. 우수공무원 :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시정완수를 위한 책임감이 왕성하고 창의력을 발휘 능동적으로 직무하여 시정발전에 유공한자

- 3. 유공공무원 : 시정발전에 유공한 정년퇴직자, 순직자, 면직자 및 타부처전출자

제 166조 제 2항중 제 2호를 삭제하고, 제 3호 및 제 4호를 제 2호 및 제 3호로 하며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년퇴직

- 서울시제직근속 10년미만은 2만원
- 서울시제직근속 20년미만은 3만원
- 서울시제직근속 20년이상은 5만원

별표 18 및 별지제 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 57호서식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제 18> 피 평 정 자 와 확 인 자				
기 관 별	구 분	피 평 정 자	명 정 자	확 인 자
1. 본 청		4 갑 이상	실 과 장	관, 국 장
		4 을 이하	계 장	실 과 장
2. 구 청		3 을	국 장	구 청 장
		4 갑 이하	실 과 장	국 장
3. 출 장 소		3 을	출 장 소 장	구 청 장
		4 갑 이하	실 과 장	출 장 소 장
4. 동		3 을	시 민 생 활 국 장	구 청 장
		4 갑	구 및 출 장 소 총 무 과 장	시 민 생 활 국 장 또는 출 장 소 장
		4 을 이하	동 장	구 및 출 장 소 총 무 과 장
5. 공무원 교육원 주택건설사업소 지하철본부		3 을 이하	부 과 장	원 장
			과 장	소 장
			과 장	본 부 장
6. 농촌지도소		3 을	농 정 과 장	상 업 국 장
		4 갑	소 장	농 정 과 장
		4 을 이하	계 장, 지 소 장	소 장
7. 노동위원회사무국		3 을	사 회 과 장	보 건 사 회 국 장
		4 갑 이하	소 장	사 회 과 장
8. 수원지사사무소 수도관리사업소		4 갑	소 장	수 도 국 부 이 사 관
		4 을 이하	계 장	소 장
9. 3갑이상출 장 으로 하는 사업소		3 을	소 장	본 청 주 관 국 장
		4 갑 이하	과 장	사 업 소 장
10. 3을이하출 장 으로 하는 사업소		4 갑 이상	본 청 주 관 과 장 및 구 시 민 생 활 국 장	본 청 주 관 국 장 및 구 청 장
		4 을 이하	사 업 소 장 또는 구 주 관 과 장	본 청 주 관 과 장 및 구 주 관 국 장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규정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458 호

서울특별시 기획조정 위원회규정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 중 「각 국장과 비상 계획관, 주택관리관」을 「각 국장 (비상계획관, 감사관, 소방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 한다.

교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3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198 호(71.4.7)로서 시설결정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어린이대공원-천호대교간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5 조와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3.26.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성동구구의동 ~
광장동
-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어린이대공원 ~
천호대교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규모 : B = 50 m L = 1,300 m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5. 착수및 준공예정일 : 75.1.15- 75.
9. 15
- 6. 사용또는 수용할토지 : 별첨
- 7. 토지소유자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및 성명 : 별첨

인 가 증 (안)

-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성동구 구의동 ~ 광장동
-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어린이대공원 - 천호대교간 도로 개설공사
- 3. 사업의규모 : B = 50 미터 L = 1,300 미터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5.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6. 사업기간 : 75.1.15 - 75. 9. 15
- 7.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
의의 권리명세 : 별첨
위와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의 규정의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를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

1975.

서울특별시

인가조건

- 1. 사업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별첨 설계도서(평면도)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성동구 구의동	40	답	684	40-4	도로	347	중구다동 10-3	윤봉연
2	"	40-1	대	105	40-5	"	56	"	윤봉연
3	"	41-1	전	248	41-4	"	144	"	윤봉연
4	"	147-4	전	846	147-20	"	439	"	윤봉연
5	"	147-1	대	116	147-1	"	41	"	윤봉연
6	"	147-7	대	134	147-7	"	109	"	윤봉연
7	"	147-10	전	122	147-10	"	90	성수봉2가335-103	김만수
8	"	147-3	전	23	147-13	"	17	충주시단월동219	홍영자
9	"	146-2	대	97	146-2	"	31	구의동 146	이흥구
10	"	148	수	936	148-1	"	321	서울시	
11	"	175	답	496	175-1	"	15	"	
12	"	176	전	85	176-1	"	20	"	
13	"	177	절	561	177-1	"	471	"	
14	"	178	전	663	178	"	91	"	
15	광장동	399-1	대	838	399-4	"	116	종로구명륜동1가29	조홍제
16	"	399-2	대	208	399-5	"	127	서울시	
17	"	399-3	대	129	399-6	"	97	중구남대문로2가130	Co.한일은행
18	"	400	전	162	400-2	"	89	종로명륜동1가29	조홍제
19	"	401-1	전	51	401-1	"	33	"	"
20	"	401-3	답	465	401-3	"	75	종로구신문로2가1-111	고홍명
21	"	397	대	266	397-2	"	263	중구남대문로2가130	Co.한일은행
22	"	398	지소	338	398-1	"	311	종로구신문로2가1-111	고홍명
23	"	394-3	답	1311	394-26	"	413	성동구황학동753	박수호
24	"	396-2	전	343	396-2	"	336	경기광주외환면광동리331-10	여흥인씨양호공파중증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25	광장동	246	답	883	246-2	도로	49	광장동 291	박필원
26	"	244-2	답	692	244-8	"	145	광장동 331 - 3	연윤내
27	"	237	대	168	237	"	150	종로구명륜동1가29	조홍제
28	구의동	산35-3	임야	1,103 ^{경보}	35-7	"	0319	구의동 198	김호송
29	"	산35-4	"	3,213	35-8	"	1014	중구동자동 35-28	이재화
30	"	산35-5	"	0,527	35-9	"	0210	"	이재화
31	"	산35-6	"	3,312	35-10	"	1526	"	"
32	"	산36-1	"	5,900	36-1	"	0727	서울시	"
33	"	산31-2	"	4,823	31-6	"	0510	종로구명륜동2가86-90	유창준
34	"	산31-5	"	0,201	31-5	"	0019	"	유창준
35	"	산30-4	"	1,703	30-5	"	3914	용산구한남동 26-118	오철석
36	"	산17-2	"	2,100	17-20	"	0328	중구동자동 35-28	이재화
37	구의동	산17-8	"	2,000	17-21	"	1116	"	"
38	"	산17-13	"	3,502	17-22	"	1416	"	"
39	"	산 29	"	2,100	29-1	"	0111	서울시	"
40	광장동	산81-1	"	2,926	81-13	"	0723	종로구명륜동1가5-33	조석태
41	"	산81-3	"	4,030	81-15	"	1016	종로구신분로2가1-11	고홍명
42	"	산56-3	"	5,504	56-3	"	2322	종로구명륜동1가29	조홍제
43	"	산56-1	"	0,200	56-1	"	0123	"	"
44	"	산56-6	"	1,123	56-6	"	0912	"	"
45	"	200-2	철선	50	200-6	"	6	서울시	"
46	"	200-3	"	20	200-3	"	15	서울시	"
47	"	200-4	전	43	200-8	"	29	神奈川 県 横 濱 市 若 松 町 1 丁 目 ?	김점재
48	"	200-1	전	937	200-5	"	686	"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49	광장동	201-2	철선	97	201-2	도로	60	서울시	
50	"	201-2	"	97	201-4	"	6	서울시	
51	"	201-1	도로	1	201-1	"	1	국유지	
52	"	218-1	대	24,103	218-3	"	600	중구충무로1가24-31	대한제지O.
53	"	199-1	전	534	199-3	"	469	광장동 286	고회성
54	"	310	전	606	310-2	"	5	중구도동1가27-3	명규영
55	"	199-2	대	561	199-2	"	558	신당동 420-20 미아동 1170	노원동 오순복성
56	"	198	대	226	198-2	"	38	신당동 404-3	이훈성
57	"	197	전	51	197-2	"	41	"	"
58	"	196-1	전	252	196-5	"	247	"	"
59	"	195-1	대	363	195-1	"	296	중구충무로1가24-31	대한제지O.
60	"	195-2	대	13	195-2	"	13	"	"
61	"	194-3	전	48	194-3	"	1	중구소공동112-2	이원순
62	"	194-2	임야	164	194-2	"	20	중구울지로2가148	상전범
63	"	196-2	하천	147	196-2	"	49	광장동 303	김명춘
64	"	193-1	하	31.4	193-3	"	0.6	신당동 404-3	이훈성
65	"	192-1	하	99	192-1	"	37	"	"
66	"	191-1	하	74	191-1	"	68	"	"
67	"	191-2	전	30	191-2	"	17	"	"
68	"	190-3	대	834	190-5	"	107	동대문구휘경동119-9	윤영은
69	"	190-3	대	834	190-6	"	60	"	"
70	"	190-4	하	48	190-8	"	33	신당동 404-3	이훈성
71	"	190-3	대	834	190-7	"	3	동대문구휘경동119-9	윤영은
72	"	319-4	하	51	319-8	"	3	신당동 407-17 신철동 97-23 전동동 644-88	박순실 박현업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73	광장동	246-1	대	261	246-1	도로	261	종로구명물동 1가 29	조후제
74	"	396	대	135	396	"	135	경기도양주군괴촌면방동리	이훈민 이영준 이영준
75	"	401-2	전	235	401-2	"	97	서울시 131-1	"
76	"	239	답	520	239-2	"	225	서대문구연희동 1-86	김계철
77	구의동	147-12	전	23	147-12	"	23	구의동 147-12	황원익
78	"	42	대	55	42	"	55	중구다동 10-3	윤봉연
79	"	41-2	전	30	41-2	"	30	구의동 41-2	김사일
80	"	147-8	전	252	147-8	"	252	중구다동 10-3	김봉연
81	"	178-1	전	138	178-1	"	138	중구명동 2가 53-1	이종철
82	"	178-2	전	111	178-2	"	111	"	"
83	"	147-5	대	119	147-5	"	119	중구다동 10-3	윤봉연
84	"	147-6	전	104	147-6	"	104	"	"
85	"	147-9	전	39	147-9	"	39	"	"
86	"	산36-4	임야	0715	산36-4	町步	0715	중구명동 2가 53-1	이종철
87	"	산31-3	"	0217	산31-3	"	0217	종로구명물동 2가 86-20	유창준
88	"	산31-4	"	0319	산31-4	"	0319	"	"
89	"	산36-3	"	1300	산36-9	"	0819	서울시	"
80	"	산36	"	0500	산36-10	"	0401	중구명동 2가 53-1	이종철
81	"	산36-2	"	1400	산36-2	"	1015	동대문구창신동 329-17	연근덕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68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저정업체 지정공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저정

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3.26

서울특별시 관

1. 지정업체					단위 : ₤
지정번호	기업제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5 수출액
472	광성섬유공업사	이광무	성동구성수2가동310-52	베리야스	80,000
923	은진물산주식회사	홍순호	영등포구시흥2동675	앨범	420,000

◎ 서울특별시공고제 6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257 호 (71.5.7) 로 고시된 불광천복개공사구간에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건설국건설행정과 및관할은평출장소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5. 3. .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시행의위치 : 서대문구불광동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불광천복개공사
3. 사업의규모 : B=25m L=52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확수및 준공예정일 :
75.3.20 - 75.12.31
6. 수용또는사용할 토지및 건물
서대문구불광동315 대 30 명및
본 저번상 건물
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설명 :

1. 건 물 재 산 조 서

소재지	지번	구 조	진 평	주 소 소 유 자 명	
				주 소 소 유	성 명
불광동	315	세멘부력세멘와중	12 평	불광동 315	권 우 섭

2. 토 지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주 소 소 유 자 명	
				주 소 소 유	성 명
불광동	314	대	30 평	불광동 315	권 우 섭

○ 서울특별시 공고제 70 호

중구청장공인개각공고

다음과 같이 당시 산하 중구청장
의 공인을 폐기하고 개각사용토록
하였기 이를 공고함.

1975. 3. 26

서울특별시장

1. 공인명 :

중구청장의 직인

중구청장의 계인

2. 사용일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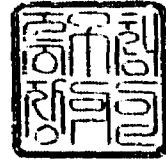
1975. 4. 1. 09:00

3. 공인의 인영

폐 기 인 영

개 각 인 영

직
인



계
인



○ 서울특별시 공고제 72 호

도봉구청장공인개각공고

다음과 같이 당시 산하 도봉구청
장의 공인을 폐기하고 개각 사용토
록 하였기 이를 공고함.

1975. 3. 28

서울특별시장

1. 공인명 : 도봉구청장직인

도봉구청장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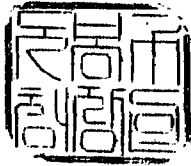
2. 사용일시 : 1975.4.1. 09:00

3. 동인의 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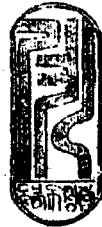
책 기 인 영

개 각 인 영

책
인



책
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73 호

1975년도실업제학생현장
실습업체협의지정공고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2에 의거

75년도 실업제학생현장실습협의 지
정된 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
다.

1975. 3. 29

서울특별시장

실업학교현장실습산업체지정내역 (승락내역)

현 장 실 습 학 교					현 장 실 습 대 상 업 체			
학 교 명	소재지	실습 학과	실습 시간	실습 기간	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비 고
삼척공전	삼척	기계과	5	7.20-9.20	쌍용상피동해공장	강원도삼척군	진봉현	
"	"	화공과	5	"	"	"	"	
서울대	서울	자원과	2	7.20-8.25	"	"	"	

현 장 실 습 학 교					현 장 실 습 대 상 업 체			
학교명	소재지	실습학과	실습 학점수	실습기간	산 업 체 명	소 제 지	대표자	비 고
서울대	서울	화공과	2	7.20-8.25	방용상의동해공장	강원도삼척군	진봉현	
"	"	재료과	2	"	"	"	"	
"	"	자원과	2	"	방용상의영월공장	강원도영월군	"	
"	"	화공과	2	"	"	"	"	
"	"	재료과	2	"	"	"	"	
울산공대	울산	화학과	3	7.1-8.30	동서석유화학	서울중구	유양수	
서울공대	서울	"	2	8.1-8.30	"	"	"	
인하공대	인천	전기과	1	"	현우산업	"	박정	
"	"	기계과	1	"	"	"	"	
충남공대	대전	공업교육	10	7.21-8.20	정수철업훈련원	서울용산	이기일	
한양대학	서울	건축과	1	8.1-8.30	현우산업	서울중구	박정	
"	"	토목과	1	"	"	"	"	
서울공대	"	재료과	5	7.20-8.10	해남사	목포시산점동	김준형	숙식.
"	"	자원과	3	7.20-8.5	일실산업	종로관훈동	이석곤	교통신
"	"	기계설비	2	7.20-8.25	아세아자동차	전남광주공정	장상태	저차부
"	"	기계전기	7	"	이천전기산업	인천시	서상록	담
성균관대	"	전기과	5	7.13-2.15	이천전기공업	"	"	
"	"	기계과	5	"	"	"	"	
중앙대	"	전기과	2	7.20-8.20	"	"	"	
연세대	"	"	3	7.20-8.30	"	"	"	
고려대	"	"	5	7.15-7.30	"	"	"	
서울대	"	기계전기	15	7.20-8.25	대한석유공사	울산	유재홍	
연세대	"	화공과	3	7.20-8.20	"	"	"	
"	"	전기과	2	7.20-8.30	"	"	"	
"	"	기계과	2	7.15-8.20	"	"	"	
고려대	"	화공과	2	7.15-7.30	"	"	"	
"	"	기계과	1	"	"	"	"	
승전대	"	전기과	1	7.20-8.20	"	"	"	

현 장 실 습 학 교					현 장 실 습 대 상 업 체			
학 교 명	소재지	실습학과	실습생 수	실습시간	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비고
중앙대	서울	화공과	2	7.20 - 8.20	대한석유공업	울산	유재홍	
숙련대	"	전산	2	7.21 - 8.21	"	"	"	
연세대	"	전기	4	학교와타협	국제전기	서울공농동	양재권	
고려대	"	"	5	조정 "	"	"	"	
건국대	"	"	4	"	"	"	"	
승전대	"	"	5	"	"	"	"	
중앙대	"	"	4	"	"	"	"	
연세대	"	전자과	3	7.1 - 8.30	민성전자	서울등촌동	박조태	
승전대	"	"	2	7.20 - 8.20	"	"	"	
광운전자	"	응용전자	2	"	"	"	"	
성균관대	"	전자	3	76.1.13-2.13	"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74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

당시에서 지정하 수출품생산지정업체
중 소재지가 변경된 다음 업체를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및 자금
지원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 공고한다.

1975. 3. .

서울특별시장

지 정 취 소 대 체 지 정

지정 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지정 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1028	아진산업(주)	황봉순	도봉구수유동 573-3	인삼차	1028	아진산업(주)	황봉순	도봉구수유동 558-8	인삼차

◎ 용산구공고제 55 호

공인개각공고

당구관하동장의 공인이 노후
발되어 개각하였기 그 개각인영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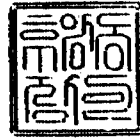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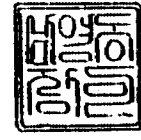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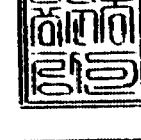
1975. 3. 24





















용산구청장



1. 사용일시 : 75.4.1. 09:00

2. 공인명 : 동장지인

3. 공인의 인영 : 다음

공 인 개 각 인 영				
후 안 동 장		용산 2가제 1동장		용산 2가
구 인 영	개 각 인 영	구 인 영	개 각 인 영	구 인 영
				
제 2 동 장		남 영 동 장		청 파 제 1 동 장
개 각 인 영	구 인 영	개 각 인 영	구 인 영	개 각 인 영
				
청 파 제 2 동 장		원 효 로 제 1 동 장		원 효 로
구 인 영	개 각 인 영	구 인 영	개 각 인 영	구 인 영
				
제 2 동 장		효 창 동 장		용 문 동 장
개 각 인 영	구 인 영	개 각 인 영	구 인 영	개 각 인 영
				

한강로제 1 동장		한강로제 2 동장		한강로
구 인 영	개작인영	구 인 영	개작인영	구 인 영
				
제 3 동장	이촌제 1 동장		이촌제 2 동장	
개작인영	구 인 영	개작인영	구 인 영	개작인영
				
이대원 1 동장		이대원 2 동장		한남제
구 인 영	개작인영	구 인 영	개작인영	구 인 영
				
1 동장	한남제 2 동장		서빙고 동장	
개작인영	구 인 영	개작인영	구 인 영	개작인영
				

보 광 동 장			
구 인 영	계 각 인 영		
			

사 령

◎ 1975. 3. 26

김 철 수

소방형에 임함.
6호봉을 단함.
성동소방서장에 보함.

◎ 1975. 3. 27

누 지 과 지방행정 정 준 영
사 무 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동대문구 지방건축 박 원 석
기 기

도봉구 지방건축 박 창 석
기 기 원 보

마 포 구 지방건축 정 인 길
거 원 보

은평출장소 장 기 관
·

친효출장소 한 경 덕
·

종 로 구 지방건축 김 성 면
기 기 원

주매건설사업소 파견근무를
명함.

◎ 1975.3.31

독도수원지 지방회공 신 무 상
사 무 소 기사보

75.3.25일자 발경제 128호
를 동일자토 취소함. (본인포기)

진 축 과 지방건축 홍 정 길
거 사 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 울 특 별 시 장